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.(목) 11:00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6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2. (수정안 12. 29.)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 (수정안 12. 29.)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07,717,384	707,717,384	545,733,305	12,416,344	51,465,113	98,102,622	- <35,762,867>
일반회계	695,665,460	695,665,460	532,501,288	12,416,344	54,124,013	96,623,815	- <35,262,867>
특별회계	12,051,924	12,051,924	13,232,017	-	-2,658,900	1,478,807	-
의료급여	655,976	655,976	503,592	-	76,544	75,84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4,400	-	347,992	-	-
주 차 장	10,753,556	10,753,556	12,434,025	-	-3,083,436	1,402,967	- <500,000>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4. 검토의견

- 2021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최종 규모는 7,077억 1,73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,457억 3,330만원과 제1회 추경 124억 1,634만원, 제2회 추경 514억 6,511만원, 간주처리 981억 262만원임.

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
총 50건 357억 6,286만 7천원임.

- 명시이월(부서별 현황) : 19개부서 50건 35,762,867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	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
계		50	35,762,867	10	도로과	4	1,824,712
1	여성가족과	4	1,193,864	11	행정지원과	3	339,917
2	아동청년과	3	7,883,144	12	문화체육과	2	1,205,738
3	주택과	1	80,000	13	마을자치과	2	1,821,620
4	안전도시과	1	116,729	14	교육지원과	4	7,473,020
5	도시계획과	1	315,220	15	지역경제과	4	2,899,365
6	건축과	1	20,678	16	도시재생과	4	4,066,311
7	공원녹지과	6	2,533,506	17	청소행정과	1	92,800
8	주차관리과	1	500,000	18	보건의료과	3	987,550
9	건설행정과	1	1,084,011	19	건강증진과	4	1,324,682

-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2건 226억 1,034만원임.

(복지가족국 7건 9,077,008천원 도시안전국 10건 3,066,133천원
교통건설국 6건 3,408,723천원, 경제환경국 9건 7,058,476천원)

○ 2021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명	세 부 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 비
합 계 : 2개 부서 / 7건		9,101,744	9,077,008	1,500,000	1,074,864	6,502,144
여 성 가 족 과 (4건/1,193,864천원)	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	569,136	569,136		569,136	
	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	12,664	6,728		6,728	
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320,000	380,000		380,000	
	생활문화센터 조성	238,000	238,000		119,000	119,000
아 동 청 년 과 (3건/7,883,144천원)	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·관리	86,000	8,000			8,000
	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	5,375,144	5,375,144			5,375,144
	금천 청년꿈터 신축	2,500,800	2,500,000	1,500,000		1,000,000

-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부서 7건, 90억 7,700만원이며,
 - 여성가족과 : 4건 1,193,864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 고 (사 유)
		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
합 계 (4 건)		1,139,800	1,193,864	0	1,074,864	119,000	
1	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	569,136	569,136		569,136		[집행시기 미도래] 2021년 국비 교부되었으나 2022년 시비 교부 및 구비 편성 (본예산 기반영)으로 2022년 사업 집행
2	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	12,664	6,728		6,728		[연도 내 집행 불가]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연속성 및 전액 집행을 위한 명시이월 조치 요청으로 이월하고자 함
3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320,000	380,000		380,000		[연도 내 집행 불가] 사전행정절차(시 투자심사, 시 공공건축 심의 등)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
4	생활문화센터 조성	238,000	238,000		119,000	119,000	[연도 내 집행 불가] 사전행정절차(시 투자심사, 시 공공건축 심의 등)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

-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4건 11억 9,386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시비교부 및 구비 편성으로 2022년 사업 집행으로 이월하며
-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명시이월 요청으로 이월
-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3억 8천만원은 사전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으로 이월
-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2억 3,800만원 또한 사전행정절차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

- 아동청년과 : 3건 7,883,144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 고 (사 유)
		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
합 계 (3건)		7,961,944	7,883,144	1,500,000	0	6,383,144	
1	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·관리	86,000	8,000			8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유니세프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친화도조사 후 주민토론회 실시
2	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	5,375,144	5,375,144			5,375,144	[연도 내 집행 불가] 대체부지 검토추진 중
3	금천 청년꿈터 신축	2,500,800	2,500,000	1,500,000		1,000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1차 공사비 계약 후 집행 잔액 및 '21. 10. 교부된 특 별조정교부금(15억원)을 2022년 2차 공사비로 사용 하고자 함.

·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3건 78억 8,314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며

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8,000만원은 유니세프 운영 지침에 따라
아동친화도 조사 후 주민토론회 실시됨에 따라 이월

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부지매입비, 등기 수수료 등이 연도내 지출
불가하여 이월

금천청년꿈터 25억원은 공사 집행 잔액 및 교부금을 2022년 집행하고자 이월

-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
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
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1. 12. 21.] [법률 제18585호, 2021. 12. 21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